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02
----------	------

2018. 6. 19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8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8.6.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그 간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직위원회 회의를 부위원장(3명)이 주관하게 될 경우 주관 순서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8조제4항)

-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안 제10조제1항)
- 서울시건축비엔날레에 선정된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의 사업기획, 국내·외 행사개최 및 참여 등 사업 홍보, 국내·외 협업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비엔날레 현장 방문 자료수집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협의완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 (결과: 개선권고, 붙임 참조)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협의완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 없음

라. 기타

- 입법예고 (2018. 3. 8. ~ 3. 28.) 결과: 해당없음

4.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2018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하여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 회의를 부위원장이 주관할 경우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8조제4항),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안 제10조제1항),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의 현장방문 자료수집 등 업무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안 제11조의2)하고자 하는 것임.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조직위원회 운영규정의 보완 및 약칭 사용 관련(안 제7~9조)

-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서울비엔날레”로 약칭하고 있으나,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안 제8조제4항은 조직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당연직 위원의 순서를 정하려는 것임. 이는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시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인 행정 1·2부시장 및 선출직 위원 1인 중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순서를 사전에 정함으로써 조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한편, 안 제8조제5항에서는 현행 조례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

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에서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음.

둘째, 운영위원회의 성별제한 규정 신설 관련(안 제10조)

- 현행 조례에서는 서울비엔날레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총 17명 이내에서 구성토록 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특정 성(性)이 편중될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임.
- 이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이를 바로잡되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게만 성별제한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셋째,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전문가 운영 관련(안 제11조의2)

- 안 제11조의2는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의 현장방문 자료수집 등 업무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는 민간전문가인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을 뿐,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의

1)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비엔날레의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비엔날레의 예산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서울비엔날레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업무범위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민간전문가로 위촉되는 총감독과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전문가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참석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특히, 예산지원²⁾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안 제11조의2제2항), 이는 조례제출 전 감사담당관에 의뢰한 부패영향평가 결과³⁾(붙임 1 참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그 사용한계가 불명확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장치가 불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른 것임.
- 이에 따라 지원경비의 불법 부당한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제제조치(지원금 회수, 수혜자격 배제)가 가능해져 행정목적에 부합한 예산집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2) 향후 5년간(‘19년~‘24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용추계결과, 안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연평균 682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3) 감사담당관-3554(2018.3.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울특별시 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02
----------	---------

제안일자 : 2018. 6. 19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원만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 디자인 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2제1항)
-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국내외 비엔날레 행사 등에 방문·답사하게 하고 자료수집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 시장이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경우 집행내역을 보고받게 함.(안 제11조의2제3항)
-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하게 함(안 제11조의2제4항)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안 제1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

안 제1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
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11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p>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p> <p>① <u>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비엔날레 총감독(제9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과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서울특별시 전시예술·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가능한 자를 말한다) 등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u>이 경우 시장은 방문</u></p>	<p>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p> <p>① <u>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u>1. 서울비엔날레 총감독</u></p> <p><u>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u></p> <p><u>3. 디자인분야 전문가</u></p> <p><u>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u>② 제11조의2 제1항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의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u></p>	<p><u>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u></p> <p><u>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u></p>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서울비엔날레”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주관하고”를 “주관(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선출부위원장 순으로 한다)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회”를 “1회에 한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구성 및 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서울비엔날레”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종전 제4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3항(중전의 제1항) 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u>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u>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략)</p> <p>④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p> <p>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u>1회</u> 연임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⑦ 조직위원회의 <u>구성 및 운영</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7조(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u>서울비엔날레</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조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주관(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하고</u> ----- --.</p> <p>⑤ ----- ----- <u>1회에 한하여</u> -----.</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 <u>운영</u>----- ----- -----.</p>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서울비엔날레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 -----

-----.

② (생략)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⑤·⑥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삭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1조의2(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

① 시장은 서울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2.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방문·
답사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민간
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야하며, 여비 외의 예산을 지원
할 경우에는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을 보고받아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